

서울특별시교육청 ‘농촌 유학 사업’ 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497호
2. 발 의 자 : 최호정 의원 등 76명
3. 발의일자 : 2023. 2. 6.
4. 회부일자 : 2023. 2. 9.

II. 주문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3년도 ‘농촌 유학 사업’이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교육청은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여, 의회에게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지방자치법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지출항목은 집행할 수 없게 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바, 이 사업을 추진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이 공무원에게 부여된 법령 준수의 성실 의무를 어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함.

III.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 11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금 포함)에 ‘농촌 유학’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음.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2년 11월 29일 ‘농촌유학’ 사업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의결 하였음.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12월 7일 해당 사업

예산을 교육위 의결과 같이 역시 전액 삭감하였으며, 12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교육위와 예결위가 심의한 것과 같이 ‘농촌유학 사업’에 대한 지출항목을 삭감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금 포함)’이 의결되었음

-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이기는 하나,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지출항목이라면 사업추진을 잠정 보류하고 의회의 심의 완결과정을 기다리는 것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공직자의 기본 자세이고 사업추진이 무산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적절한 업무 집행이라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이 충분히 예상된 12월 8일에 ‘23년도 농촌유학생 모집 공고’를 하고, 12월 13일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하며,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이 확정된 12월 20일에도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을 받았음.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일련의 행정처리는 지방의회에게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지방자치법과 모든 지출항목은 예산에 편성하고,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설령 예비비 등이라도 지출을 할 수 없게 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함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2. 이송처 : 감사원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감사청구안은 2023년 2월 6일 최호정 의원 등 76명에 의해 의안 번호 제497호로 발의되어 2023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감사청구안은 2023학년도 농촌유학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관계 공무원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등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농촌유학 사업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해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농촌유학 사업 개요 및 추진 경과 등에 대한 설명

-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유학’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1~2학년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농·산·어촌 소재 소규모 학교에 단기 농촌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 동 사업은 6개월에서 1년간 가족과 함께 농·산·어촌 지역에 이주하거나 해당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지역 내 유학센터에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또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해당 농산어촌 지역의 시·도 교육청과 각각 예산을 분담하여 초기정착금 및 최대 1년간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표] 농촌유학 정착금 및 지원금 지원액

거주유형	유학비	지원액(월)	
		서울	전남·전북
가족체류형	월 임대료 및 생활비	학생 1인: 30만원, 학생 2인: 40만원 학생 3인: 50만원, 학생 4인: 60만원	30만원
홈스테이형	유학비(월 80~100만원)	30만원	30만원
유학센터형	유학비(월 70만원)	30만원	30만원
초기정착금		학생 1인당 50만원	-
취약계층 지원금		1가구당 20만원	-

자료: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2022.12.),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추진 계획.

- 2021학년도부터 시행된 농촌유학 사업은 2022학년도 2학기를 기준으로 전라남도에 236명, 전라북도에 27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을 통해 지급된 초기정착금 및 지원금은 5억 8천 8백만원 수준입니다.¹⁾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11월 1일, 2023학년도 농촌유학 예산이 포함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11월 29일 교육위원회의 예비 심사와²⁾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³⁾ 12월 16일 본회의 의결을⁴⁾ 거치면서 농촌유학 운영비와 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금 전출금 등이 상당 부분 감액된⁵⁾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12월 7일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추진 계획(안)」 (이하 ‘추진계획(안)’)을 확정하고,⁶⁾ 같은 날 교육혁신과 부서 홈페이지를 통해 농촌유학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였습니다.⁷⁾

1)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 내부자료, 2022년 농촌유학 사업 추진 결과(2022.12.31. 기준)
 2)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2022.11.29.)
 3)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2022.12.7.)
 4)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2.12.16.)
 5) 심의 결과, 농촌유학 지원금 등을 집행하기 위한 생태전환교육기금 전출금 10억 원과 농촌유학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578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이 삭제되었음.
 6)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추진 계획(안)(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18278, 2022.12.7.)

[그림] 예산 삭감 이후 게시된 농촌유학생 모집 관련 홍보자료

<p>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 12월 12일 · 30</p> <p>2023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참가자 모집 12월 14일 수요일부터 12월 20일 화요일까지,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서울 재학학교로 제출하세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 #2022년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p> <p>2023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2023.3.1 - 8.31 (6개월, 1회 연장 가능) 지역: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 대상: 서울 소재 공립초 1-6, 중 1-2학년 유형: 가족제형, 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 <p>서울 학생이 농촌의 학교로 전학해 6개월 이상 생활하며 자연을 체험하는 농촌유학! 2023년 1학기 유학생 모집이 곧 시작됩니다.</p> <p>농촌유학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p>	<p>서울특별시교육청</p> <p>농촌을 밝히는 도시아이들</p> <h2>2023 농촌유학생 모집중</h2> <p>신청기간: 2022. 12. 14.(수) - 12. 20.(화)</p> <p>거주유형: 가족제류형, 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p> <p>유학지역: 전남 및 전북 유학대상: 공립초 1-6학년, 중 1-2학년</p> <p>초기정착금 50만원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p>
<p>2023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참가자 모집 관련 페이스북 홍보글(2022.12.12. 게시)⁸⁾</p>	<p>2023 농촌유학생 모집 관련 서울시교육청 블로그 게시글(2022.12.12. 게시)⁹⁾</p>

○ 이후 12월 12일 서울시교육청 SNS(페이스북, 카카오토티, 인스타그램 등) 계정에 농촌유학생 모집에 대한 홍보글을 게시하고,¹⁰⁾ 12월 13일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학부모 대상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모집 설명회’ 영상을 공개하는¹¹⁾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7)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 홈페이지 > 부서 업무방 >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추진 계획 및 각종 서식(351번 게시글)”
<http://buseo.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94&bbsBean.bbsSeq=9269&ctgCd=206> (검색일 2023.2.23.)

8) <https://www.facebook.com/seouleducation> (검색일 2023.2.23.)

9) <https://blog.naver.com/seouledu2012/222953248376> (검색일 2023.2.23.)

10) 서울시교육청 공식 SNS계정을 통해 2022년 12월 12일 게시된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참가자 모집’의 링크는 아래와 같음.
- 페이스북 : <http://t2m.kr/QHCNG> (검색일 2023.2.24.)
- 카카오토티 : <https://story.kakao.com/ch/seouleducation/5HWGL69ik69> (검색일 2023.2.24.)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p/CmDnhDTPjJz/?igshid=YmMyMTA2M2Y=> (검색일 2023.2.24.)

1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2023학년 1학기 농촌유학 모집 설명회
<https://www.youtube.com/watch?v=HxkDy08LdS8> (검색일 2023.2.23.)

전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1차 유학 신청을 시행했고, 학교 가배정과 사전방문 등을 거쳐 2023년 1월 5일부터 5일간 농촌 유학에 대한 1차 최종 신청을 시행하여 익일 최종 배정을 시행하였으며,¹²⁾

1차 신청에 대한 최종 확정이 이뤄진 후 12일부터 17일까지 신청자들에게 농촌유학 지원금 예산 삭감에 대한 공지가 문자메시지로 안내 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¹³⁾¹⁴⁾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월 16일부터 진행된 2차 신청에서부터 지원금 지급이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며 1차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2월 6일 농촌유학 지원금 9억 5천 8백만원을 포함하여 편성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2월 20일 추경 예산안을 철회하였습니다.

[표] 2023학년도 농촌유학 예산편성 등 사업 추진 개요

일시	내용
2022.11.1.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학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교육청→시의회)
2022.11.29.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 삭제, 전출금 전액 및 농촌유학 운영비 등 578만 3천원 감액

12) 의원발의 결의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특별시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1247, 2023.2.21.)

13) 대한경제(2023.1.15.), “‘농촌유학’ 전학까지 했는데… 예산 전액삭감 날벼락”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1151408339260659> (검색일 2023.2.24.)

14) 의원발의 결의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1247, 2023.2.21.)

일시	내용
2022.12.7.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동일
2022.12.7.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추진 계획」 게시 (교육혁신과)
2022.12.12.	공식 SNS계정에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생 모집 관련 홍보물 게시 (교육청)
2022.12.13.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모집 설명회 영상 게시(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2022.12.14. ~ 2022.12.20.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1차 모집 신청 게시
2022.12.16.	서울시의회 본회의,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2023.1.5. ~ 2023.1.9.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1차 모집 최종신청서 제출
2023.1.12. ~ 2023.1.17.	농촌유학 지원금 예산 삭감에 대한 학부모 안내 진행 (문자메시지 및 온라인 설명회 개최 등)
2023.1.16. ~ 2023.1.20.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2차 모집 신청 게시 * 추가모집 최종 배정일 : 2023.2.10.(금)
2023.2.6.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교육청→시의회) * 농촌유학 지원금 지출을 위한 9억 5천 8백만원 포함 편성
2023.2.9.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추진 계획(수정)(안)」 변경
2023.2.10.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신규 참가자 안내사항 게시 (교육혁신과)
2023.2.20.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철회 (교육청→시의회)

자료: 서울특별시의회 전자회의록, 「의원발의 결의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 담당관-1247, 2023.2.21.),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유학 추진 계획(수정)」(2023.2.)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나. 감사청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공익감사 청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

-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제1항은 공익감사청구의 대상을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사·재판 중이거나 국가기밀·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건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¹⁵⁾

○ 동 감사청구안에서 제기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농촌유학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학예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사무에 해당하는바, 공익감사 청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동 감사청구안은 서울시교육청의 농촌유학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와 해당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서울시의회의 고유 권한 침해와 참여 학생 및 학부모의 피해 발생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공익감사 청구의 주요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 이와 함께 동 사안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제2항에서 규정된 감사청구 대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른 청구 기간에도¹⁶⁾ 하자가 없으므로 공익감사청구에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에 대한 검토

15)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청구대상) ① 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의 직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중이거나 재판(헌법재판소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 법령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제13조의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수사 또는 재판, 행정심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감사실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2. 수사, 판결, 재결, 결정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이나 형 집행에 관한 사항

3.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4. ~ 7. (생략)

16)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6조(청구기간)에 따라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 제기할 수 없음.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안에 대해 “삭감한 농촌 유학 사업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고, 생태전환교육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을 준비한 것이므로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¹⁷⁾

이어 교육청은 “의회의 지적 및 의견을 존중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상 허용되지 않은 집행 방법(예비비 등)을 적용하거나 고려한 바가 없어 「지방재정법」 위반 사항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¹⁸⁾

- 그러나 농촌유학 추진에 대한 일련의 과정은 예산 사용 여부를 떠나 재원이 동반되는 정책사업을 의회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더욱이 이와 같은 행위는 참여 학생 또는 그 가정에게 실제 피해나 피해 발생 가능성을 야기함으로써 「행정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신뢰 보호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종합 의견

- 지금까지의 사실관계와 검토 의견 등을 종합했을 때 동 감사청구안은 감사원 감사청구의 요건을 충족하며, 서울시교육청의 농촌 유학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담당 공무원 등의 성실의무 위반과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침해 사항에 대한 문제 제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농촌유학사업과 관련해서는 의회신문고를 통해 참여 학생의 심리적 치유와 농어촌 체험 기회 확대 등 농촌유학 사업의 유익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바,¹⁹⁾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

17) 의원발의 결의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특별시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1247, 2023.2.21.)

18) 위의 글.

19) 의회신문고에 2023년 1월 12일 이후부터 농촌유학 예산 삭감에 관한 민원이 16건 접수되었음.

으로 고려하여 동 안건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농촌 유학 사업’ 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이준석 2180-8263	입법조사관	김지수 2180-8264
----------	------------------	-------	------------------

관계 법령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시행 2022.11.30.] [감사원 훈령 제878호, 2022.1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청구된 공익감사청구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감사원법」 제22조와 제23조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 "공익"이란 주요 사업, 예산, 안전, 환경, 복지 등의 분야에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사회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을 말한다. 다만, 특정집단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조(청구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8세 이상으로서 300명 이상의 국민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상시 구성원수가 300명 이상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다만, 정치적 성향을 띠거나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 감사대상기관의 장. 다만,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중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자체감사기구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3의2. 자체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자체감사기구'를 말함)의 장. 다만,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중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지방의회.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조(청구대상) ① 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의 직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수사 중이거나 재판(헌법재판소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 법령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제13조의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수사 또는 재판, 행정심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감사실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 수사, 판결, 재결, 결정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이나 형 집행에 관한 사항
-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결정사항이거나 주민투표 및 지방의회의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다만, 뇌물수수, 문서위조 등의 위법한 사실이 있거나 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정보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 감사청구의 주된 내용이 공익 사항이 아닌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 사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6. 감사원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감사한 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7. 「감사원법」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한 감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6조(청구기간)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무처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사무처리와 연관된 후속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47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①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